


 <b>보도 자료</b> 	
<b>보도 일시</b> (인터넷) 2022. 3. 17.(목) 12:00 (지면) 2022. 3. 18.(금) 조간	<b>배포 일시</b> 2022. 3. 17.(목) 08:30
<b>담당 부서</b> 대학학술정책관 대학재정장학과	<b>책임자</b> 과 장 노진영 (044-203-6285) <b>담당자</b> 사무관 윤은정 (044-203-6271)

**저금리 전환대출 시행을 위한 「장학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까지 최초 확대 시행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전환대출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의 「한국장학재단법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3월 18일(금)부터 4월 27일(수)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 지난해 12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1. 12. 28. 공포)되어, 과거 상대적으로 고금리(3.9~5.8%)\*로 학자금 대출을 받았던 채무자들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2012년까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채무자 대상으로 전환대출을 확대·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 \* 이전의 대출 금리 현황: (2009.2학기) 5.8% → (2010.1학기) 5.7% → (2010.2학기) 5.2% → (2011.1~2학기) 4.9% → (2012.1~2학기) 3.9%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법에서 위임한 전환대출의 구체적인 범위를 이전에 시행(2회)되었던 전환대상 등을 고려하여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로 규정한다.

구분	1차 (2014.5.14.~2015.5.13.)	2차 (2020.3.24.~2021.3.23.)
전환 대상	•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2005학년도 ~ 2009학년도 1학기) •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2009학년도 2학기)	• 기대출 →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전환 내용	• 기대출 → 취업 후 상환 또는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 금리: 6.96%(평균) → 2.9%	• 기대출 →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 금리: 6.96%(평균) → 2.9%
실적	300,641명 대상 21,109억 원	18,000명 대상 616억 원

- 이번 전환대출은 상대적 고금리 부담에도 기존 1, 2차 전환대출에서 제외되었던 2010~2012년 학자금 대출 채무자까지 확대하여 시행된다는 데 그 의미가 있으며,
  -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된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잔액을 가지고 있는 9.5만 명에게 연간 약 36억 원의 이자부담을 경감시켜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22년 4월 27일(수)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누리집(<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우편·팩스·전자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신문규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힘든 청년들에게 학자금대출 상환부담이 조금이라도 경감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교육부는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해 7월부터 전환대출을 시행할 예정이다.

【붙임】 「장학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

교육부공고 제2022-84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18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기존 학자금 대출자의 학자금 대출 부담 완화를 위하여 전환대출 대상의 범위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기대출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641호, 2021. 12. 28. 공포, 2021. 12. 28. 시행)됨에 따라, 전환대출 대상의 범위를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전환대출 대상인 기대출의 범위를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받은 기대출로 규정(안 제2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941
  - 이메일 : ttokkida@korea.kr
-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전화 : 044-203-62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전환대출 대상의 범위) 법 제3조의2에 따른 전환대출 대상인 기대출의 범위는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받은 기대출을 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조의2(전환대출 대상) 법 제3조의2에 따른 전환대출 대상인 기대출의 범위는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받은 기대출을 말한다.